

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5일[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·지역은 30일(30일 연장 가능)]
------	------	------	--

신청인	성명(법인명) (한글) (영문)	외국인(법인)등록번호
	국적	여권번호
	생년월일(법인 설립일자)	(휴대)전화번호
		전자우편 주소 @
① 주소(법인소재지)		

신청
사항

②취득 상세원인							
③취득 예정가액(원)							
④ 토지에 관한 사항	소재지	지번	지목		취득면적 (㎡)	지분	용도지역· 용도지구
			법정	현실			
	토지 이용 현황	⑤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(종류, 내용 등)					
		⑥그 밖의 이용현황					
⑦취득 용도			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제출서류	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등기사항증명서

유의사항

1.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,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.
2. 전자문서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, 첨부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허가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① “주소”란은 실제 거주 중인 주소를 적되, 실제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현지어로 적습니다. 또한, 법인의 주소는 대한민국에 법인의 사무소 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나 사람의 주소를 적고,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② “취득 상세원인”란에는 매매, 교환, 증여 등의 계약원인을 적습니다.
- ③ 증여, 상속 등에 따라 취득 예정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와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,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“취득 예정가액”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 “토지에 관한 사항”란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법정 지목, 현실 지목 및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,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.
- ⑤ “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”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·구조·사용년수 등을,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·본수·수령 등을 적습니다.
- ⑥ “그 밖의 이용현황”란에는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외 나대지, 도로, 임야 등 토지이용현황을 적습니다.
- ⑦ “취득 용도”란에는 주거용(아파트), 주거용(단독주택), 주거용(그 밖의 주택), 레저용, 상업용, 공장용, 농업용, 임업용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,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.

※ 부동산,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